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759
------------	------

2021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광호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303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체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25. ~ 11. 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원안가결
- 신설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경영개선사업, 택시 감차보상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 대체사업 등 사업을 서울시 조례의 재정지원 가능 사업에 추가하는 조항임

-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내용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12년에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¹⁾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1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설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서울시 재정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여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 5월 동 조례를 개정²⁾하여 재난발생 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³⁾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

1) 2012.7.30.일 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용자조건을 완화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4)에서는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보조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국토교통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시 예산절감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과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추후 조례개정시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 생략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 ----- ----- -----.</p> <p>1.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제7조제1항 각 호에 <u>해당하는 사업</u></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